

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



한국프로축구연맹

목 차

제1조. 목적	3
제2조. 유소년 클럽 구성	3
제3조. 유소년 클럽 운영	3
제3조의1. 전담 법인을 통한 유소년 클럽 운영	4
제4조. 유소년 선수의 선발 및 이적	4
제5조. 우선지명	5
제6조. 기타	5

부칙

제1조. 시행일	6
제2조. 규정의 해석	6

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

제1조 목적

- ① K리그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(이하 '세칙'이라 함)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K리그 활성화를 위해 프로클럽의 유소년 축구 보급 및 우수선수 발굴,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다.
- ② 본 세칙은 'K리그 제2장 선수 규정' 및 '대한축구협회의 등록규정', '프로축구클럽 리그 참가자격 부여 등에 관한 규정'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다.

제2조 유소년 클럽 구성

- ① 프로클럽은 반드시 다음의 연령별 유소년 팀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- 1) 18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(이하 'U18'팀)
 - 2) 15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(이하 'U15'팀)
 - 3) 12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(이하 'U12'팀)
 - 4) 10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(이하 'U10'팀)
- ② 신생 프로클럽의 경우 프로 가입 1년차에는 상기 1항 중 1개 연령대팀을 운영하며, 프로 가입 2년차에는 상기 1항의 유소년 팀을 모두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프로클럽은 상기 1항의 팀들을 매년 협회 등록규정에 의거 등록하고, 그 증빙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 유소년 클럽 운영

- ① 프로클럽은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에 관한 계획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유소년 클럽의 형태는 프로클럽의 연고지역 내 학교팀 또는 클럽팀 모두 가능하며, 어떤 형태든 클럽은 선수 선발 및 이적, 지도자 선임 및 관리 등 육성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.
- ③ 상기 제2조 1항의 팀은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프로그램 및 공식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. 단, 상기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팀은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의무는 없다.
- ④ 유소년 클럽 운영을 위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.
 - 1) 유소년 팀의 기술 및 인성교육 등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관리하는 육성책임자(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 보유자)를 두어야 한다.
 - 2) 연령별 유소년팀을 지도하는 감독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가. U18팀, U15팀 : AFC B급(KFA 2급) 이상의 지도자 자격
 - 나. U12팀, U10팀 : AFC C급(KFA 3급) 이상의 지도자 자격

- ⑤ 프로클럽은 유소년 클럽 운영을 위한 훈련시설을 1개 이상 소유하거나 임대 등의 방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 해당 훈련시설에는 라커룸과 의료실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.
- ⑥ 클럽은 유소년 선수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 - 1) 유소년 선수의 부상 및 병력 기록지를 포함한 관리 체계
 - 2) 유소년 클럽 전담의 연맹이 정한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학과를 재학/졸업한 유소년 클럽 전담 의무 트레이너 연간 2명 등록
 - 3) 유소년 클럽의 훈련 시설 인근의 병원 협력 체계
- ⑦ **프로클럽은 소속 유소년 선수가 연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**

<변경. 2023/12/04 개정>

제3조의1 전담 법인을 통한 유소년 클럽 운영

- ① 프로클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유소년 팀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가. 프로클럽 산하 유소년 팀 운영이 정관상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
 - 나. 프로클럽이 법인의 기본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였을 것
 - 다.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고시되었을 것
- ② 프로클럽이 위 제1항의 비영리법인에 유소년 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연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연맹은 해당 법인의 운영 계획과 예산, 유소년 클럽 운영 목적과 취지에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③ 비영리법인이 유소년 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세칙에 따른 모든 의무는 프로클럽이 부담한다.

제4조 유소년 선수의 선발 및 이적

- ① 연령별 유소년 팀의 선수 수는 협회의 등록 및 대회 출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구성한다.
- ② 프로클럽은 타 프로클럽의 유소년 클럽에 소속되었던 선수를 자신의 소속으로 등록시킬 수 없다. 단, 선수가 원소속 클럽을 탈퇴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타 프로클럽으로의 이적에 대한 원소속 클럽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
원 소속 클럽을 탈퇴한 후 K리그 유소년 클럽이 아닌 국내외 타 클럽 소속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 선수도 같다. 단, 본 항은 선수가 원 소속 클럽을 탈퇴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선수(혹은 만 12세)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.
- ③ 원소속 클럽을 탈퇴한 선수가 위 제2항에서 정한 서면동의 없이 타 유소년 클럽 또는 프로클럽 소속으로 등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, 원소속 클럽은 해당 선수가 등록된 클럽에 이를 통지하고,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맹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유소년 선수의 선발 스카우트 비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.
 - 1) 프로클럽은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양도처(학교 또는 클럽)에 축구용품 또는 공식 후원금 형태로만 지원한다. 단, 양도처 지도자에게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할 수 없다.

- 2) 연맹이 비용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할 경우, 비용 지급 관련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.

제5조 우선지명

- ① 상기 제2조를 충족한 프로클럽은 소속 유소년 선수들에 대해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우선지명 대상은 산하 U18팀 소속 선수(졸업예정자)로 클럽 시스템에 3년(프로 등록 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간 연속) 이상 소속된 선수에 한한다.
- ③ 상기 제3조에 의거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는 신생 프로클럽은 U18팀 첫 등록 시 소속된 선수에 한해서 3년 이상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도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우선지명 인원수 제한은 없다.
- ⑤ 클럽은 매년 9월 말일까지 U18팀 소속 선수 중 익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⑥ 상기 제4조 ②항에서 정하는 서면합의가 없는 타 프로클럽 출신 유소년 선수는 우선지명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⑦ 우선지명이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.
- ⑧ 우선지명 된 선수는 반드시 지명 프로클럽에 입단하여야 한다.
- ⑨ 우선지명 선수는 K리그 등록 및 이적(국내 및 해외 이적 포함), R리그 참가 시, 반드시 지명 프로클럽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.
- ⑩ 우선지명의 효력은 연맹이 이를 공시한 날부터 발생하며, 프로클럽이 우선지명을 중도에 철회하지 않는 한 선수가 우선지명한 프로클럽에 입단하는 시점 또는 연맹의 공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 유지된다. 단, 대학교 휴학기간, 국내 아마추어리그(대학을 제외한 아마추어리그) 및 해외 프로/아마리그 등록 기간, 병역 복무 기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우선지명의 효력기간에서 제외한다.
 - 1) 대학 진학 후 휴학을 한 기간
 - 2) 대학팀 및 K3, K4리그 소속 구단 외 다른 국내 아마추어팀에 등록한 기간
 - 3) 병역 복무 기간
 - 4) 해외 프로 또는 아마추어 클럽에 등록한 기간
- ⑪ 우선지명 철회는 프로클럽과 유소년 선수의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 <변경. 2023/12/04 개정>

제6조 기타

- ①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연맹, 협회의 관련 규정과 규정에 준하는 결정사항을 따른다.
- ② 프로클럽과 프로클럽 산하 유소년 클럽에 입단하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(또는 만 12세 이상) 선수 간의 입단 계약은 연맹이 정한 표준입단합의서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.
- ③ K리그 프로 클럽 산하 유소년팀에 입단하는 선수의 훈련보상금 지급 및 산정공식 기준은

연맹 표준입단합의서의 내용을 따른다.

- ④ 본 세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프로 클럽에게 유소년 선수 선발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, 연맹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항에 의하여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⑤ 프로클럽은 매년 아래의 각 호에 대해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.
 - 1) 당해연도 유소년 클럽의 운영 계획
 - 2) U10팀(축구 교실 등)의 운영 현황
 - 3) 기타 연맹이 정하는 사항
- ⑥ 클럽은 연고지 내 유소년 선수 진로 확대 및 아마추어 축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직접 사업 또는 현물,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- ⑦ 유소년 선수 관련 분쟁 발생 시, 연맹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.

부 칙

제1조 시행일

1. 본 세칙은 연맹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본 세칙 제3조 6항 2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규정의 해석

본 세칙에서 연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.

- ① '18세 이하(U18)'는 만 19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
- ② '15세 이하(U15)'는 만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
- ③ '12세 이하(U12)'는 만 1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

개정내역

2019/06/21	개정
2019/12/02	개정
2020/01/20	개정
2020/08/19	개정
2021/10/08	개정
2021/12/07	개정
2022/01/17	개정
2023/12/04	개정



한국프로축구연맹

www.kleague.com